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 및 정책현안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소득세 독립세 전환, 안전조직 강화, CCTV관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 업무기능 증가 및 기능 이관에 따라 부서 및 담당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

2. 주요내용

가. 총 괄 : 2실, 11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읍 9면, 1의회
⇒ 1실, 12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읍 9면, 1의회

나. 과 명칭변경(5)

○ 주민복지실 ⇒ 주민복지과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 새마을청소년과 ⇒ 새마을체육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다. 담당업무 조정

○ 기획감사실 시책개발담당
시책개발 업무 ⇒ 기획담당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업무 ⇒ 예산담당
농산어촌개발 업무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 총무과 총무담당 민방위업무 ⇒ 안전관리담당
교육지원담당 업무 ⇒ 교육후생담당
후생복지담당 업무 ⇒ 교육후생담당

○ 재무과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 징수
⇒ 통합징수담당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 읍·면(※사무위임조례 개정)

○ 주민복지실 주거급여업무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업무 중 합창단 업무
⇒ 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담당
체육진흥담당 업무 전반 ⇒ 새마을체육과 체육진흥담당
○ 새마을청소년과 여성아동담당 업무 전반
⇒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청소년담당 업무 전반 ⇒ 주민복지과 청소년담당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 클린성주 만들기 업무 전반
⇒ 클린성주담당
수계관리담당 자연형생태하천 가동보 관리 업무
⇒ 안전건설과 하천방재담당
○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업무 전반
⇒ 농정과 농정담당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측량 및 지형·지리정보 업무
⇒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
도시개발담당 참외테마광장 관리 업무
⇒ 농업기술센터 참외소득담당
도시개발담당 장기미집행(미불)용지 도시계획 시설관리
⇒ 도시계획담당
○ 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가로수관리 업무
⇒ 산림보호담당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인적재난관리 업무
⇒ 총무과 안전관리담당
안전건설담당 자연재난 업무 전반
⇒ 안전건설과 하천방재담당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업경영 업무
⇒ 농촌지원과 지도교육담당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참외기술담당 업무 전반
⇒ 연구개발과 참외소득담당
귀농귀촌 업무전반 ⇒ 귀농귀촌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2014. 11. 27. ~ 2014. 12. 6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청소년과”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체육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행복생활권 계획 총괄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제28호를 제32호로 하고,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9.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0. 재난상황 종합관리
31.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4조제4항(종전의 제5항)31호를 제32호로 하고,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측량 및 지형 지리공간 정보관리
제4조제5항(종전의 제2항)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제25호를 제32호로 하며,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그 밖에 주민복지 및 여성아동,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종전의 제2항)제25호부터 제3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26.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2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28.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29.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0. 드림스타트사업
3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제4조제6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제12호부터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9호를 제12호로 하고 21호 및 22호를 각각 13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23호를 제15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5. 그 밖의 문화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7항제20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제7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

제4조제9항 중 “새마을청소년과”를 “새마을체육과”로 하고, 제35호
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26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33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27.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8.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9.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30.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31.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32.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11항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13항제26호부터 제29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34호를 제29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②「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부칙 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⑤「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단의 설치)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청소년과,……..	제3조(실·과·단의 설치) ……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체육과,…… …….
제4조(분장사무) ①(생략) 1.~22.(생략) 23. 기초생활권 계획 총괄(포괄보조사업) 24.~25.(생략)	제4조(분장사무)① (현행과 같음) 1.~22.(현행과 같음) 23. 행복생활권 계획 총괄 24.~25.(현행과 같음)
② 주민복지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4.(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5.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⑤ <현행 2항에서 항 이동> ⑤ 주민복지과…… ……. 1.~24.(현행과 같음) 25.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26.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2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28.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29.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0. 드림스타트사업 3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2. …… 주민복지 및 여성아동, 청소년 업무……
③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7.(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8.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현행 제3항에서 이동) 1.~27.(현행과 같음) 28.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9.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0. 재난상황 종합관리 31.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32. (현행 제28호와 같음)
④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7.(생략)	③ (현행 제4항에서 이동) 1.~27.(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30.(생략) <신 설> 31. 그 밖의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④ (현행 제5항에서 이동) 1.~30.(현행과 같음) 31. 측량 및 지형·지리공간 정보관리 32. (현행 제31호와 같음)
⑥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11.(생략) 12.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13.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4.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5.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16.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17.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18.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19.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제공업 등록관리 20. 성주군합창단 운영 및 관리 21.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22.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23. 그 밖의 문화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⑥ 문화관광과…… ……. 1.~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2.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삭제) 13. (현행 제21호와 같음) 14. (현행 제22호와 같음) 15. ……문화관광……
⑦ (생략) 1.~19.(생략) <신 설> 20. 오염총량 관리제 업무 21.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22.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단속 23.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민원 2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준공 25. 폐기물관련업 허가 및 신고 26.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27. 석면피해구제 관련 업무 28.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29. 그 밖의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⑦ (현행과 같음) 1.~19. (현행과 같음) 20. 클린성주만들기 사업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25. (현행 제24호와 같음)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27. (현행 제26호와 같음) 28. (현행 제27호와 같음) 29. (현행 제28호와 같음) 30. (현행 제29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⑨ 새마을청소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⑨ 새마을체육과……
1.~25.(생략)	1.~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신 설>	27.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신 설>	28.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신 설>	29.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신 설>	30.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신 설>	31.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신 설>	32.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26.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3. (현행 제26조와 같음)
27. 정보통신망 운영	34. (현행 제27조와 같음)
28.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5. (현행 제28조와 같음)
29. 지역정보호 관련 업무전반	36. (현행 제29조와 같음)
30. 홈페이지 및 웹메일 운영	37. (현행 제30조와 같음)
31. 정보화 교육	38. (현행 제31조와 같음)
3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9. (현행 제32조와 같음)
33. 영상회의 시스템 및 행정방송망 운영	40. (현행 제33조와 같음)
34.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41. (현행 제34조와 같음)
35.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35. (삭제)
36.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36. (삭제)
3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37. (삭제)
38.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38. (삭제)
39.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9. (삭제)
40. 드림스타트사업	40. (삭제)
4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1. (삭제)
42.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정보통신, 여성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42. ……새마을개발 및 정보통신 업무……

현 행	개 정 안
⑪ (생략) 1.~9. (생략) 10. 측량 및 지형 지리공간 정보관리 11. 광역교통 기본·관리계획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12. 온천업무 13. 광고물 관리업무 14. 창고업에 관한 업무 15.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17.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8.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9. 무허가 건축물 단속 20.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1. 건축물대장 관리 22.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⑪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0. (현행 제11조와 같음) 11. (현행 제12조와 같음) 12. (현행 제13조와 같음) 13. (현행 제14조와 같음) 14. (현행 제15조와 같음) 15. (현행 제16조와 같음) 16. (현행 제17조와 같음) 17. (현행 제18조와 같음) 18. (현행 제19조와 같음) 19. (현행 제20조와 같음) 20. (현행 제21조와 같음) 21. (현행 제22조와 같음)
⑬ (생략) 1.~25. (생략) 26.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7.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28. 재난상황 종합관리 29.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30.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31. 하천종합관리 32.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33. 4대강 살리기 사업 34. 그 밖의 안전건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⑬ (현행과 같음) 1.~25. (현행과 같음)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26. (현행 제30호와 같음) 27. (현행 제31호와 같음) 28. (현행 제32호와 같음) 29. (삭제) 29. (현행 제34호와 같음)